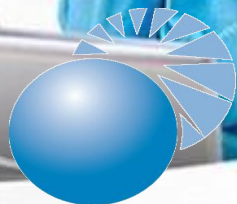


업무설명회

2012년도 중소서민감독부문 업무계획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대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 중소기업 금융산업 현황 및 환경변화

1. 중소기업 금융산업 현황
2. 중소기업 금융산업 환경변화

II.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잠재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2. 감독제도 개선 등을 통한 감독시스템 선진화
3. 서민·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지원 확충
4.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참고〉 상호금융·여전사 제도개선 사항

1. 중소기업 금융산업 현황

㉠ 자본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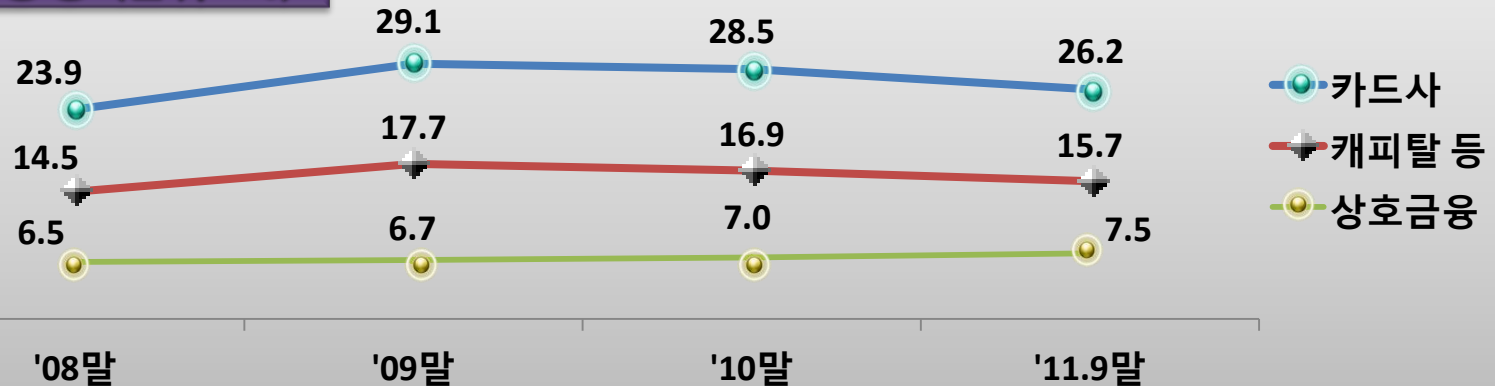
● 상호금융조합 (순자본비율)

✓ 자산성장 및 부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지속적인 개선 추세

● 여전사 (조정자기자본비율)

✓ 여전사는 최근 소폭 악화되었으나, 양호한 수준 유지

자본적정성 (단위: %)



㉠ 자산 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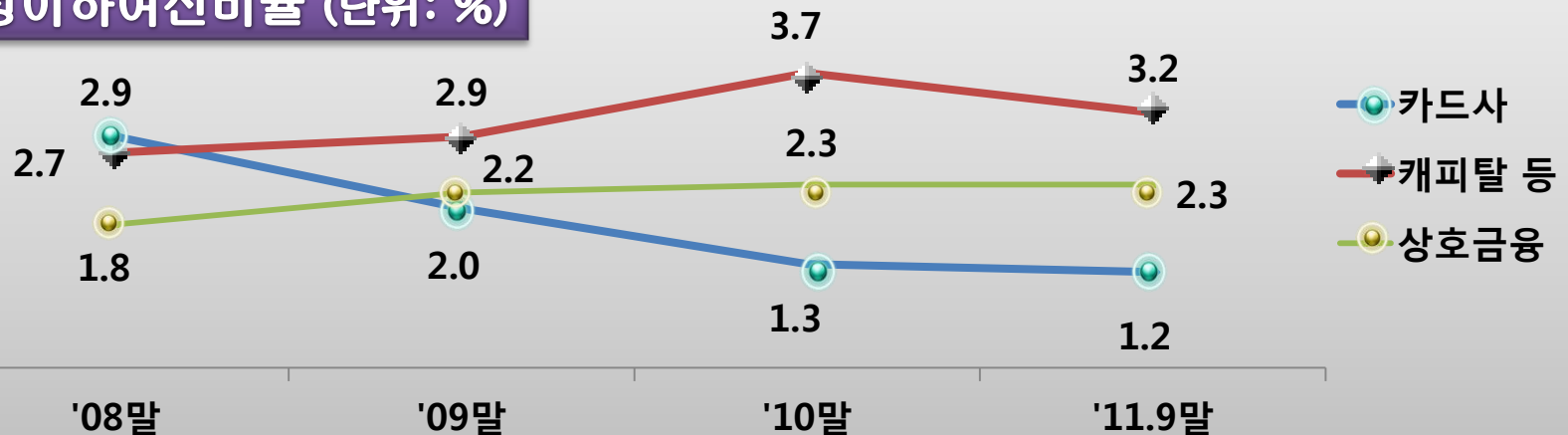
● 상호금융조합

✓ 고정이하여신비율 전년 수준 유지

● 여전사

✓ 고정이하여신비율 소폭 하락

고정이하여신비율 (단위: %)



㉔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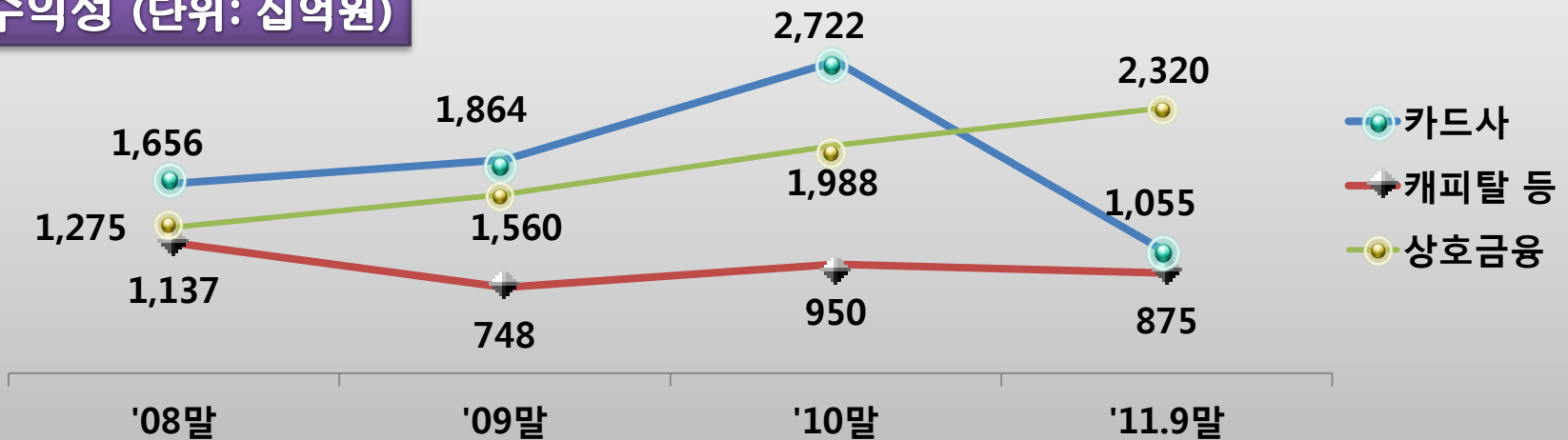
● 상호금융조합

✓ 지속적인 순이익기조를 유지

● 여전사

✓ 대손비용 증가 및 자산 증가세 둔화 등으로 수익성 다소 저하

수익성 (단위: 십억원)



2. 중소기업 금융산업 환경변화

상 호 금 융

경영안정성 및 자산건전성 악화

-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기 재침체(double dip) 우려 및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
 - ✓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안정성과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 ✓ 경기침체가 현실화 · 장기화될 경우 저신용 · 저소득 고객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타격이 예상

가계대출 증가

-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가 현재까지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 ✓ 11.8월부터 시작된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금년도 증가율이 경제성장 속도를 초과할 우려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

- 국내외 경제 성장세 둔화, 가계부채 잠재위험 증대 등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큰 여전업 특성상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

수익성 저하 우려

- 가맹점수수료 인하 압력, 경기 둔화에 따른 자동차 금융실적 악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수익성 저하 우려

자금조달 애로 가능성

- 안정적인 수신기능이 없어 회사채 발행 등에 주로 의존하는 여전사의 경우 국내금융시장 충격발생시 조달금리 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가능성

II. 2012년 업무 추진계획



1. 잠재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2. 감독제도 개선 등을 통한
감독시스템 선진화

3. 서민·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지원 확충

4.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1. 잠재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상 호 금 융

1 가계대출 증가 등 잠재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증감현황과 금리 운영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대출증가, 고금리 수신유치 행위 등 억제
- 가계대출 급증,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악화우려 조합(Watch list)에 대해 리스크관리 지도

2 고위험 자산운용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 권역외/공동대출 감축 등 조합의 리스크관리 수준 및 손실감내 능력을 초과하는 자산운용 억제
- 토지담보대출*, 동산담보대출 취급현황 및 내재 리스크 분석

* 소규모이나 PF와 성격 유사

여 전 사

3 여전사 자산건전성 점검 강화

- 여전사 연체율, 전이율 등 건전성 지표를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는 등 건전성 관리 강화
- 신용카드 회원 중 저신용 다중채무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리스크 분석 강화

4 여전사 리스크관리 실태 현장점검 강화

- 카드사 등 여전사의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리스크관리상의 취약점 개선 지도
- * 중점검사사항 : 「신용카드업 리스크관리 모범 기준('06.3.)」의 이행 여부 등

5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기준 합리화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기준을 합리화하여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
-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억제를 통해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가계부문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서민금융

6 대부업체 취약부문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 실태조사 자료, 수시 징구자료 등을 토대로 대부업체 영업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검사착안 사항 발굴
- 대부업체 및 대외기관(언론, 국회, 협회 등)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대부업체의 부당한 영업관행 등 지도*

* '11년중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 및 케이블TV 광고 자제 지도한 바 있음

상 호 금 융

7 시장불안요인 예방을 위한 검사제도의 탄력적 운용 (1)

- 상시감시결과 재무상태 급변조합, 회계분식 우려조합, 건전성 악화 조합 등 이상징후 조합에 대해서는 테마검사 확대 실시
- 취약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회의 역할 제고를 통한 검사업무 효율화 추진
-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 회계분식,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유자금 부당 운용 등 주요 위규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여 전 사

7 시장불안요인 예방을 위한 검사제도의 탄력적 운용 (2)

- 카드사 마케팅 경쟁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불건전 경쟁행위 및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억제
- 여전사의 고객정보 해킹·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 운영 및 내부통제 실태 현장점검 강화

서민금융

7 시장불안요인 예방을 위한 검사제도의 탄력적 운용 (3)

- 대부업법 개정*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적시에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금융이용자 보호 도모

* 주요 개정내용 : 대부광고시 경고문구 표시, 3백만원 초과 대부시 변제능력조사 의무화, 대부중개수수료 5% 초과 지급 금지 등

- 직권검사 대상에 근접*한 대부업체에 대해 지자체와 공조(요청검사등)를 통해 테마검사 실시

* 직권검사 대상이 아닌 자산규모 50억 이상~100억미만 대부업체 등

2. 감독제도 개선 등을 통한 감독시스템 선진화

상 호 금 융

1 상호금융조합간 상이한 감독제도 개편

- 상호금융조합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되는 경영실태 계량평가 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감독형평성 제고

2 신탁의 자본확충 방안 검토

- 출자금 제도 개선 등 신탁의 자본 확충방안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기관에 건의

상 호 금 융

3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경영공시 확대

- 일정규모 이상(자산 300억원) 조합의 경우 중앙회 및 조합 홈페이지에 경영현황자료를 공시
 - 자체 홈페이지 운영 능력이 없는 영세조합(자산 300억원미만 등)의 경우 경영현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
- 우리원 홈페이지(경영정보통계)의 조합 경영공시자료를 확대·보완하여 시장과 감독정보 공유를 활성화

4 조합 외부감사 확대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 일정규모 이상(예: 자산 300억원 또는 500억원) 모든 조합은 매년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토록 관련 법령 법제화 추진
 - * '10년말 현재 신탁의 경우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을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협의 경우 자산 500억원 이상 조합을 4년에 1회 외부감사 수감(수협, 산림조합은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여 전 사

5 신용카드시장의 건전한 발전 유도

- 신용카드 해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휴면카드 감축 촉진 및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도모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용실태점검을 강화
-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감독 책임 확대 및 제재수준 강화*
 - * 카드사의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제재수준을 강화

3. 시민·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지원 확충

상호금융·시민금융

1 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유도

- 새희망홀씨 목표 취급액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도하고 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 대형 상호금융조합에 '시민금융애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민금융 지원관련 One-stop 서비스 제공

2 금리인하 유도를 통한 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직거래 대출센터 및 대형 대부업체의 대부금리 비교 공시 활성화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유도
- 한국이지론 증자이후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대출상품 중개방식 개선,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해 중개기능 활성화

3. 시민·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지원 확충

여전사·서민금융

3 불법 사금융행위 모니터링 및 구제활동 강화

-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근절 및 피해구제활동 지속 추진
-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통한 불법 금융행위 단속 강화

4 가맹점 권익보호를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가맹점 가입신청 후 철회 및 계약 해지권 부여, 신용판매대금 지급 시한 명시 등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제정

4.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상호금융 · 여전사

1 약관 심사 및 불합리한 관행 지속적 발굴·개선

- 상호금융조합의 예금자보호제도 및 후순위차입금 조건 등에 대한 표시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불완전 판매 예방
- 신용대출시 차주 신용도 평가를 통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조합의 연대보증 제도 개선
-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약관 변경명령 조치 등을 통한 여전사 약관심사의 실효성 제고

여 전 사

2 카드사 전화마케팅 모범규준 마련

- 불완전 판매 등으로 민원이 많은 카드사 전화마케팅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3 여전사 고객정보 보호 강화 및 불공정 영업관행 개선

- 카드 개인회원 권익보호 강화내용을 반영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및 체크·선불카드 회원 표준약관 제정
- 여전사 대출모집인 및 대리점의 불법수수료 요구, 고객정보 유출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4 신용카드 불법·부당거래 감독 강화

- 신용카드 거래 거절, 카드회원 부당대우, 신용카드 불법 현금유통(카드깡)에 대한 카드사 업무처리 실태 점검 강화

상호금융 · 여전사 제도개선 사항

1. 상호금융
2. 여전사

상 호 금 융

1 간주조합원 대출규제 ('12.2.23. 시행예정)

-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간주조합원*에도 적용(시행령 개정)
*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
-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신규 취급액의 3분의 1 이내)에 포함

2 동일인대출한도 규제 ('12.2.23. 시행예정)

- 조합이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설정(시행령 개정)
 -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해서는 3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50억원의 한도 설정(감독규정 개정예정)

상 호 금 융

3 건전성 분류기준·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12.2.23. 시행예정)

- 건전성 분류 기준을 '13. 7. 1. 이후 2년간 은행수준으로 강화(개정 예정)

연차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현행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6개월 이상 (손실확실시)
1년차	2개월 미만	4개월 미만	4개월 이상	4~12월 미만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12개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2년차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3~12개월 미만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12개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13. 7. 1. 이후 3년간 은행수준으로 강화 (개정 예정)

연차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현행	0.5%	1%	20%	75%	100%
1년차	0.65%	4%	20%	55%	100%
2년차	0.8%	7%	20%	55%	100%
3년차	1.0%	10%	20%	55%	100%

여 전 사

4 카드대출에 대한 총당금적립률 강화 ('11.6.17. 시행)

- 예상손실률이 높은 카드대출에 대한 총당금적립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카드사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감독규정 개정)

* 정상(1.5%→신용판매 1.1%, 카드대출 2.5%), 요주의(15%→신용판매 40%, 카드대출 50%), 고정(20%→신용판매 60%, 카드대출 65%) 등

감사합니다